The Sharp 디오션시티 더샵

디오션시티 더샵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5.02.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 단, 계약금 (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9.05.02.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군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4항 및 제53조 참조)
  ※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 등" 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1순위 청약 시 과거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 가점제 제한 대상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theoceancity-thesharp.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청약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동 · 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 기간
특별공급	2019.05.08.(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포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일시 : 2019.05.16.(목) • 개별조회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일시 : 2019.05.17.(금)~2019.05.22.(수)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 일시 : 2019.05.27.(월)~2019.05.29.(수) (3일간 :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1순위	2019.05.09.(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05.10.(금) (08:00~17:30)				

※ 일반공급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5543호」에 따라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에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간 공개합니다. (단, 당첨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 등의 공개 불가)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주택행정과 – 9767 (2019. 5. 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31번지 일원(디오션시티 A4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7개동 총 973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7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5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 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타입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합계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계			
민영 주택	2019000408 – 01	59.9939A	59A	59.9939	19.5197	79.5136	29.0354	108.5490	31.7322	17	34	17	5	73	98	171	3
	2019000408 – 02	59.9873B	59B	59.9873	19.4800	79.4673	29.0322	108.4995	31.7287	5	11	5	1	22	36	58	2
	2019000408 – 03	84.9959A	84A	84.9959	25.6929	110.6888	41.1358	151.8246	44.9564	49	98	49	14	210	282	492	16
	2019000408 – 04	84.9983B	84B	84.9983	25.9986	110.9969	41.1369	152.1338	44.9576	8	16	8	2	34	47	81	–
	2019000408 – 05	103.9793	103	103.9793	30.2486	134.2279	50.3233	184.5512	54.9971	–	–	11	3	14	98	112	4
	2019000408 – 06	118.9943	118	118.9943	34.1567	153.1510	57.5902	210.7412	62.9389	–	–	5	1	6	50	56	2
	2019000408 – 07	145.9629	145	145.9629	46.2752	192.2381	70.6424	262.8805	77.2033	–	–	–	–	–	3	3	–
	합 계									79	159	95	26	359	614	973	27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리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 후 1개월내	2019.10.21	2020.02.20	2020.06.22	2020.10.20	2021.01.20	2021.04.20	입주지정일
59.9939A	59A	1층	3	38,195,571	140,304,429	178,500,000	5,000,000	12,850,000	17,850,000	17,850,000	17,850,000	17,850,000	17,850,000	17,850,000	53,550,000
		2층	6	38,195,571	143,204,429	181,400,000	5,000,000	13,140,000	18,140,000	18,140,000	18,140,000	18,140,000	18,140,000	18,140,000	54,420,000
		3~4층	12	38,195,571	148,904,429	187,100,000	5,000,000	13,710,000	18,710,000	18,710,000	18,710,000	18,710,000	18,710,000	18,710,000	56,130,000
		5~19층	90	38,195,571	156,604,429	194,800,000	5,000,000	14,480,000	19,480,000	19,480,000	19,480,000	19,480,000	19,480,000	19,480,000	58,440,000
		20층 이상	60	38,195,571	158,504,429	196,700,000	5,000,000	14,670,000	19,670,000	19,670,000	19,670,000	19,670,000	19,670,000	19,670,000	59,010,000
59.9873B	59B	1층	2	38,191,370	136,408,630	174,600,000	5,000,000	12,460,000	17,460,000	17,460,000	17,460,000	17,460,000	17,460,000	17,460,000	52,380,000
		2층	2	38,191,370	139,308,630	177,500,000	5,000,000	12,750,000	17,750,000	17,750,000	17,750,000	17,750,000	17,750,000	17,750,000	53,250,000
		3~4층	4	38,191,370	145,008,630	183,200,000	5,000,000	13,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18,320,000	54,960,000
		5~19층	30	38,191,370	152,608,630	190,800,000	5,000,000	14,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19,080,000	57,240,000
		20층 이상	20	38,191,370	154,608,630	192,800,000	5,000,000	14,280,000	19,280,000	19,280,000	19,280,000	19,280,000	19,280,000	19,280,000	57,840,000
84.9959A	84A	1층	16	54,113,285	189,086,715	243,200,000	5,000,000	19,320,000	24,320,000	24,320,000	24,320,000	24,320,000	24,320,000	24,320,000	72,960,000
		2층	17	54,113,285	193,086,715	247,200,000	5,000,000	19,720,000	24,720,000	24,720,000	24,720,000	24,720,000	24,720,000	24,720,000	74,160,000
		3~4층	36	54,113,285	201,086,715	255,200,000	5,000,000	20,520,000	25,520,000	25,520,000	25,520,000	25,520,000	25,520,000	25,520,000	76,560,000
		5~19층	270	54,113,285	211,686,715	265,800,000	5,000,000	21,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26,580,000	79,740,000
		20층 이상	153	54,113,285	214,386,715	268,500,000	5,000,000	21,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80,550,000
84.9983B	84B	2층	3	54,114,813	188,485,187	242,600,000	5,000,000	19,260,000	24,260,000	24,260,000	24,260,000	24,260,000	24,260,000	24,260,000	72,780,000
		3~4층	6	54,114,813	196,485,187	250,600,000	5,000,000	20,060,000	25,060,000	25,060,000	25,060,000	25,060,000	25,060,000	25,060,000	75,180,000
		5~19층	45	54,114,813	207,085,187	261,200,000	5,000,000	21,12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78,360,000
		20층 이상	27	54,114,813	209,785,187	263,900,000	5,000,000	21,390,000	26,390,000	26,390,000	26,390,000	26,390,000	26,390,000	26,390,000	79,170,000
103.9793	103	1층	4	66,199,210	238,500,790	304,700,000	10,000,000	2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91,410,000
		2층	4	66,199,210	243,300,790	309,500,000	10,000,000	2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92,850,000
		3~4층	8	66,199,210	253,000,790	319,200,000	10,000,000	21,920,000	31,920,000	31,920,000	31,920,000	31,920,000	31,920,000	31,920,000	95,760,000
		5~19층	60	66,199,210	265,900,790	332,100,000	10,000,000	2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33,210,000	99,630,000
		20층 이상	36	66,199,210	269,100,790	335,300,000	10,000,000	2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100,590,000
118.9943	118	1층	2	75,758,624	271,841,376	347,600,000	10,000,000	24,760,000	34,760,000	34,760,000	34,760,000	34,760,000	34,760,000	34,760,000	104,280,000
		2층	2	75,758,624	277,341,376	353,100,000	10,000,000	2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105,930,000
		3~4층	4	75,758,624	288,441,376	364,200,000	10,000,000	2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109,260,000
		5~19층	30	75,758,624	303,141,376	378,900,000	10,000,000	27,890,000	37,890,000	37,890,000	37,890,000	37,890,000	37,890,000	37,890,000	113,670,000
		20층 이상	18	75,758,624	306,841,376	382,600,000	10,000,000	28,260,000	38,260,000	38,260,000	38,260,000	38,260,000	38,260,000	38,260,000	114,780,000
145.9629	145	최상층	3	92,928,387	424,171,613	517,100,000	10,000,000	4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155,13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면적 합산 시 소수점 4자리에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59.9939A	59.9873B	84.9959A	84.9983B	103.9793	118.9943	145.9629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103	118	145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대출(무이자)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무이자) 조건 분양(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 계약자가 납부)이며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에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수)

구 분			59A	59B	84A	84B	103	118	145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7	2	19	3	–	–	–	3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3	1	10	1	–	–	–	15
	국가유공자 등		2	–	5	1	–	–	–	8
	중소기업근로자		5	2	15	3	–	–	–	2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6	9	74	12	–	–	–	121
		일반공급(25%)	8	2	24	4	–	–	–	3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7	5	49	8	11	5	–	9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1	14	2	3	1	–	26
합 계			73	22	210	34	14	6	–	35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 · 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유의사항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거주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102㎡이하	전용면적 135㎡이하	모든면적
군산시 및 전라북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7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대상세대 : 총 15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로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함.
  2) 우선공급(기준소득) 또는 일반공급(상위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3)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함.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9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
- 지역우선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 거주자가 기타지역(군산시 외 전라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함.
  2)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 거주자 내 또는 기타지역(군산시 외 전라북도) 거주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3)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100			

유 의 사 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